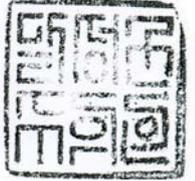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76
----------	------

제출일자 : 2015. 10.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보조 사업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준 도입

3. 주요내용

- 가. 장 구분 신설 : 총칙 등 3개장
- 나. 총칙(안 제1조 ~ 제4조) :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포괄적 규정 삭제 및 보조대상 사업유형 명시(6종 →12종)
- 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안 제5조 ~ 제10조) : 명칭변경, 사문
화된 부위원장 규정 삭제,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원칙 도입
- 라.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수행(안 제11조 ~ 제15조) : 보조사업 내
용 변경 시 제출할 서류에 사업계획변경신청서 명시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나. 예산조치 : 연 3,000,000천원 정도(세부내용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사항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 원안 동의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8. 26. ~ 2015. 9. 15.(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지원 등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2. 관내 문화유적 답사 등 체험학습 지원사업
3. 학교적응력 또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지원사업
4. 올곧은 인성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지원사업
5.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심화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6. 지역주민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사업
7.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사업(관내 통학에 한함)
8. 급식시설, 교육 정보화 등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9. 학교 운동장 또는 강당을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형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하는 사업

10. 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비 지원사업
11. 자율형고등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12.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 회계연도 군세(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고등학교 및 기숙형고등학교의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는 위 범위를 초과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장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제5조(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군수는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보조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정책사업단장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관할 교육청 교육감(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4. 그 밖에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③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군 정책사업과장이 된다.

⑥ 군수는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 정책사업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그 밖에 교육관련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교육경비 보조사업 수행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관할 교육청 교육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1. 신청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교육청과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시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며, 제2항의 통지 시 부가한 조건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각급학교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계획변경신청서
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에 대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각급학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주요내용 : 학교교육 경비지원 각종 사업
※ “비용 추계결과” 각 항목 참조

2. 비용발생 요인 : 사업비(보조금)

3. 관련조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제6항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학교 수요를 2015년 수준으로 봄

나. 추계 결과 : 합계 연 3,000백만원 정도

- 방과 후 학교지원 사업 : 연 500백만원 정도
- 관내 문화유적 답사 등 체험학습 지원사업 : 연 60백만원 정도
- 학교적응력 또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지원사업 : 연 40백만원 정도
- 올곧은 인성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지원사업 : 연 50백만원 정도
-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심화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 연 700백만원 정도
- 지역주민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사업 : 연 100백만원 정도
-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사업 : 연 120백만원 정도
- 급식시설, 교육 정보화 등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 연 300백만원 정도
- 학교 운동장 또는 강당을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형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하는 사업 : 연 410백만원 정도

○ 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비 지원사업 : 연 400백만원 정도

○ 자율형고등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 연 70백만원 정도

○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사업 : 연 250백만원 정도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국·시비 일부보조)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별지

6. 작성자 : 정책사업과 교육정책팀 김준성

[별 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0,000
교육경비 보조사업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0,000
재원 조달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군비	2,620,000	2,620,000	2,620,000	2,620,000	2,620,000	13,100,000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